

# 이주비 반환대금 및 분담금 수익금을 통한 상환 확인서

차주인 유 [ ] 설(주)(이전 덕 [ ] 설)은 경기도 의왕시 삼동 160-49 외 1필지(‘본 사업부지’)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공동주택 32세대, 업무시설 16세대 총 48세대 주상복합 신축하는 사업(이하 ‘본 사업’)을 위하여 본 사업부지 재건축을 위해 결성된 정원빌라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(이하 ‘재건축 위원회’)와 재건축시행 업무대행 계약서를 체결하였다.

재건축시행 업무대행 계약서 제 9조 1항에 의거하여 차주는 정원빌라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에게 이주비 952,764,968원을 지급하였고, 제 9조 2항에 따라 재건축 위원회는 차주에게 아파트 입주시 이주비를 반환할 예정이다.

또한 재건축시행 업무대행 계약서 제 11조 아파트 구조 및 입주분담금 내용에 따라 기본 입주분담금(한 세대당 6천만원)납부 9세대, 추가 분담금(한 세대당 8천만원)납부 7세대에 따른 총 16세대에 발생하는 입주분담금은 11억원으로 아파트 입주 시 차주에게 지급 될 예정이다.

한편, 차주는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2019년 [ ]월 [ ]일 (주)바른클라우드대부(이하 “대주”), 유정수(이하 “담보제공자”)와 대출한도액 금오억원(500,000,000)의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다. 이에 따라 대출약정서 제11조 6항에 의거하여, 차주는 입주분담금과 이주비 반환대금을 재건축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즉시 대주에게 최우선순위로 상환할 것임을 확인한다.

차주

성명

주소

주민등록번호

유 [ ] 주식회사  
경기도 의왕시 [ ] 5층 (광원빌딩)  
13 [ ] 1-0 [ ] 723  
대표 [ ]

